|  |  |  |
| --- | --- | --- |
| **증권 발행 및 판매대행 관리방법**  (2006년 9월 11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제198차 위원장회의에서 통과, 2012년 6월 18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증권 발행 및 판매대행 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의거하여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증권의 발행 및 판매대행 행위를 규율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발행인이 국내에서 주식 또는 전환가능 채권(이하 증권이라 함)을 발행하거나 증권회사가 국내에서 증권을 판매대행하거나 또는 투자자가 국내발행 증권을 구매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증권발행에 참여하는 발행인과 증권회사, 투자자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감회라 함)의 증권발행 관련 기타규정 및 증권거래소와 증권등록정산기구의 업무규칙과 중국 증권업협회의 자율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증권판매를 대행하는 증권회사는 중국증감회의 추천제도와 리스크 컨트롤제도, 내부컨트롤제도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증권발행을 위해 관련서류를 발급하는 증권서비스기구와 관계자는 본 업계에서 공인하는 업무기준과 도덕규범에 따라 법정직책을 엄격히 이행하고 발급하는 서류의 진실성, 정확성, 완벽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중국증감회는 법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판매대행 행위를 감독 관리한다.  **제2장 가격조회 및 가격확정**  **제5조** 최초로 주식을 공개 발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조회대상에게 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발행가격을 확정할 수도 있고 발행인이 주간사와 자주적으로 협상하여 발행가격을 확정하는 등 합법적이고 실행 가능한 기타방법으로 발행가격을 확정할 수도 있으며, 발행인은 공고에서 당해 발행주식의 가격확정방법을 설명하여야 한다. 상장회사에서 발행하는 증권의 가격확정은 중국증감회의 상장회사 증권발행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격조회대상이라 함은 이 방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증권투자기금 관리회사, 증권회사, 신탁투자회사, 재무회사, 보험기구 투자자, 적격 해외기구 투자자, 주간사가 자주적으로 추천한 기구투자자와 개인투자자 및 중국증감회의 인가를 받은 기타 기구투자자를 말한다.  주간사가 자주적으로 추천한 가격조회대상은 이 방법과 중국 증권업협회의 자율규칙 규정에 따라 명확한 추천원칙과 추천기준을 제정하고 투명한 추천 의결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동시에 중국증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주적으로 추천한 가격조회대상에는 보다 강한 정가능력이 있고 장기적 투자의향이 있는 기구투자자와 투자경험이 보다 풍부한 개인투자자가 포함된다.  **제6조** 가격조회대상 및 그가 관리하는 증권투자제품(이하 주식 배당판매 대상이라 함)은 중국증감회에 등록하고 중국 증권업협회의 자율화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기구투자자로서의 가격조회대상은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합법적으로 설립되었고 최근 12개월간 중대한 법률,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관련 감독관리부서의 행정처벌, 감독관리 조치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2) 합법적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신용기록기 양호하고 독립적으로 증권투자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4) 건전한 내부 리스크 평가 및 컨트롤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리스크 컨트롤지수가 관련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5)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 증권업협회에 의해 가격조회대상 명부에서 제외된 경우 제외일로부터 12개월을 경과하여야 한다.  기구투자자로서의 가격조회대상은 5년 이상 투자경험, 높은 연구능력과 리스크부담능력이 있어야 한다. 주인수업자는 정해진 추천원칙, 표준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추천해야 한다.  **제8조** 하기 기구투자자는 가격조회대상으로서 제7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외에 하기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증권회사는, 인가를 받고 중권의 자영업무 또는 증권자산 관리업무를 경영할 수 있어야 한다.  (2) 신탁투자회사는, 관련 감독관리부서에 재등록한지 만 2년이 되고 등록자본금이 4억 위원 이상이며 최근 12개월간 증권시장투자에 활약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3) 재무회사는, 설립된 지 2년 이상이 되고 등록자본금이 3억 위원 이상이며 최근 12개월간 증권시장 투자에 활약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제9조** 주간사는 주식모집 의향서를 등재한 후 가격조회대상에게 투자가치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발행인과 주간사, 가격조회대상은 어떤 형식으로도 투자가치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단, 중국증감회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투자가치 연구보고서는 판매대행업체의 연구인원이 독립적으로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업체가 판매대행팀 이외의 기타 기구에서 작성한 투자가치연구보고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자가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판매대행업체는 투자기치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완벽한 투자가치연구보고서 품질컨트롤제도를 구축하여야 하며 투자가치연구보고서 작성자는 증권회사의 내부 컨트롤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투자가치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하기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독립적으로 신중에 기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2) 인용한 자료의 진실성, 정확성, 완벽성, 권위성을 보장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발행인 소재업계에 대한 평가는 일치성과 연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 허위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없어야 한다.  **제12조** 투자가치연구보고서는 발행인의 투자가치에 대한 영향 요소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적어도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행인의 업계유형, 업계정책, 발행인과 그 주요 경쟁자와의 비교 및 소재업계에서 발행인의 지위  (2) 발행인의 경영상황 및 발전전망 분석  (3) 발행인의 이익 창출능력 및 재무상황 분석  (4) 발행인 모집자금의 투자사업 분석  (5) 발행인과 같은 업계의 비교 가능한 상장회사와의 투자가치 비교  (6) 거시경제의 추이, 주식시장의 추이 및 발행인의 투자가치에 중요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소.  투자가치연구보고서는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업계에서 공인하는 가치평가방법을 활용하여 발행인 주식의 합리적인 투자가치를 예측하여야 한다.  **제13조** 주식모집 설명서(신고용 원고)를 사전에 공개한 후 발행인 및 주간사는 특정 가격조회대상에게 비공개방식으로 초보적인 소통을 진행하고 가격의향을 조회하여 발생가격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며, 기타 합리적인 예측방법을 통하여 발행가격범위를 예측할 수도 있다.  초보적인 소통은 공개방식이나 변형적 공개방식을 취하여서는 아니되며 가격조회대상에게 사전에 공개한, 주식모집 설명서(신고용 원고) 등에서 공개한 정보를 제외한 발행인의 기타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가격조회방식으로 가격을 확정하는 경우 발행인과 주간사는 초보적인 가격조회 결과에 근거하여 직접 발행가격을 확정할 수 있으며 초보적인 가격조회를 통하여 발행가격구간을 확정하고 발행가격범위 내에서 누계입찰 가격조회를 통하여 발행가격을 확정할 수도 있다.  **제15조** 최초로 주식을 공개 발행하면서 주식모집 의향서를 등재한 후 발행인 및 주간사는 가격조회대상에게 추천하고 가격조회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 방식을 통하여 공중 투자자에게 추천할 수도 있다.  발행인 및 그 주간사가 공중 투자자에게 추천하는 경우에는 공중 투자자에게 발행인의 정보내용과 완벽성은 가격조회대상에게 제공한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제16조** 발행인 및 그 주간사가 추천과정에 과장선전이나 허위광고 등 부당 수단으로 투자자를 유도하고 오도해서는 아니되며 가격조회대상의 정상적인 견적과 구매신청을 교란해서는 아니되며 주식모집의향서 등에서 공개한 정보 이외의 기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추천 자료에 허위 기재, 오도성 진술이나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판매대행업체는 추천, 가격확정 과정의 관련 자료들을 보관하여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보관 자료에는 추천 홍보자료, 현장녹음 등이 포함되며 가격조회, 가격확정 과정을 진실하고 전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제17조** 가격조회방식으로 발행가격을 확정하는 경우 가격조회대상은 초보적 가격조회 참여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가격조회대상이 초보적 가격조회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주간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초보적 가격조회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초보적 가격조회에 참여하였지만 유효견적을 제시하지 않은 가격조회대상은 누계 입찰 가격조회와 오프라인 배당 판매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8조** 가격조회대상은 독립, 객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 가격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을 협상하거나 가격을 고의로 높이거나 낮추어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주간사의 증권 자영계정은 금번 발행주식의 가격조회와 오프라인 배당 판매, 온라인 발행에 참여하지 못한다.  발행인 또는 주간사와 실질적 컨트롤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격조회대상은 금번 발행 주식의 가격조회, 오프라인 배당 판매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온라인 발행에는 참여할 수 있다.  **제20조** 발행인 및 주간사는 발행가격범위와 발행가격을 확정한 후 각각 중국증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가격조회대상은 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지난 연도의 가격조회상황을 총결하고 이 방법 규정조건에 계속 부합여부와 가격조회대상에 대한 이 방법 감독관리 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설명하여야 한다. 총결보고서는 중국 증권업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발행인은 주간사와 자주적으로 협상하여 발행가격을 확정하거나 가격조회를 제외한 합법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발행가격을 확정할 수 있으며, 발행방안에서 가격 확정방식을 자세히 설명하고 발행방안을 중국증감회에 보고한 후 주식모집 의향서를 등재해야 한다.  **제3장 증권의 발행 판매**  **제23조** 최초 공개 발행하는 주식수량이 4억 주 이상일 경우 주식을 전략투자자에게 배당 판매할 수 있다. 발행인은 사전에 전략투자자와 배당 판매 합의를 체결하고 중국증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발행인 및 그 주간사는 발행 공고에 전략투자자의 선정기준, 전략투자자에게 배당 판매하려는 주식의 총량, 금번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보유기간 규제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4조** 전략투자자는 최초 공개 발행하는 주식의 초보적 가격조회와 누계 입찰 가격조회에 참여하지 못하며 또한 금번에 배당받은 주식을 12개월 이상 보유할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보유기간은 금법 공개 발행주식의 상장일로부터 기산된다.  **제25조** 발행인 및 그 주간사는 오프라인 배당 판매에 참여한 가격조회대상에게 주식을 배당 판매하여야 한다. 발행인 및 그 주간사가 가격조회대상에게 배당 판매하는 주식 수량은 원칙상 금번 공개 발행하는 신 주식 및 양도하는 재래주식(금번 발행이라 함) 총량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가격조회대상은 발행인, 판매대행업체와 자주적으로 협상하여 배당 판매 주식의 보유기간을 약정한다.  **제26조** 주식 배당 판매대상은 하기 유형에 한정된다.  (1) 인가를 받고 모집하는 증권투자기금  (2) 전국 사회보장기금  (3) 증권회사의 증권 자영계정  (4) 인가를 받고 설립한 증권회사의 집합자산 관리계획  (5) 신탁투자회사의 증권자영계정  (6) 신탁투자회사가 설립한, 관련 감독관리부서에 보고절차를 마친 집합신탁계획  (7) 재무회사의 증권자영계정  (8)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자산관리회사의 증권투자계정  (9) 적격 해외기구 투자자가 관리하는 증권투자계정  (10) 관련 증권 감독관리부서에 등록한 기업연금기금  (11) 주간사가 추천한 기구투자자가 관리하는 증권투자계정과 개인투자자의 증권투자계정  (12) 중국증감회에서 인정하는 기타 증권투자계정.  기구투자자가 관리하는 증권투자제품으로서 모집설명서, 투자합의서 등 서류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1, 2급 시장가격의 차액 취득을 목적으로 구매한 신 주식이라고 밝힌 경우 관련 증권투자계정은 주식 배당판매대상으로 되지 못한다.  **제27조** 가격조회대상은 그가 관리하는 주식 배당판매대상을 위해 각각 자금계정과 증권계정을 지정하여 누계 입찰 가격조회와 오프라인 배당판매에 전문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지정한 계정은 중국증감회와 중국 증권업협회, 증권등록정산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 주식 배당판매대상이 누계 입찰 가격조회 및 오프라인 배당판매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매신청자금을 전액 지불하여야 하며 단일 지정 증권계정의 누계 구매신청수량은 금번 가격조회대상에게 배당 판매하는 주식총량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29조** 발행인 및 그 주간사가 누계 입찰 가격조회를 통해 발행가격을 확정한 경우 발행가격 이상의 유효 구매신청총량이 오프라인 배당 판매수량을 초과하면 발행가격 이상의 모든 유효 구매신청에 대해 동 비율로 배당 판매하여야 한다.  **제30조** 주간사는 가격조회대상과 주식 배당 판매대상의 등록상황을 검사하고 하기 상황 중에 하나가 있는 자격조회대상에게는 주식을 배당 판매하지 못한다.  (1) 가격조회방법으로 가격을 확정하였으나 초보적 가격조회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2) 가격조회대상 또는 주식 배당 판매대상의 명칭, 계정자료가 중국 증권업협회에 등록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규정기간에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구매신청자금을 전액 이체하지 않은 경우  (4) 가격조회과정에 법률, 법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증거로 표명되는 상황.  **제31조** 발행인 및 그 주간사의 오프라인 주식 배당 판매는 온라인 발행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온라인 발행 시 발행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온라인 발행에 참여한 투자자는 가격범위의 상한 가격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만약 최종 확정된 가격이 가격범위의 상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초과부분은 투자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투자자의 온라인 발행 참여는 증권거래소와 증권등록정산기구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 최초로 주식을 공개 발행하는 발행인 및 그 주간사는 오프라인 배당 판매와 온라인 발행 간에 상호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구매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배당 판매와 온라인 발행 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온라인 구매신청이 부족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돌려 오프라인 투자자가 구매하게 하고 그래도 구매신청이 부족한 경우에는 판매대행 팀에서 기타 투자자를 추천하여 오프라인 구매신청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오프라인 계약률이 온라인 계약률의 2배 내지 4배에 달하는 경우에는 발행인 및 판매대행업체에서 금번 발행주식 중의 10%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조달해야 한다. 4배 이상에 이르는 경우에는 금번 발행주식의 20%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제33조** 초보적 가격조회를 완료한 후 공개 발행주식의 수량이 4억 주 이하이고 유효 견적을 제공한 가격조회대상이 20개 미만인 경우, 또는 공개 발행주식의 수량이 4억 주 이상이고 유효 견적을 제공한 가격조회대상이 50개 미만인 경우 발행인 및 그 주간사가 발행가격을 확정할 수 없으며 발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오프라인 투자자의 구매신청이 오프라인 판매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조달하지 못하며 발행을 중지할 수 있다. 오프라인 견적상황이 발행인과 주간사의 기대에 미달하고 온라인 구매신청이 부족하고 오프라인으로 조달한 후에도 여전히 구매신청이 부족한 경우에는 발행을 중지할 수 있다. 발행 중지의 구체 상황은 발행인과 판매대행업체가 약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발행을 중지한 후 서류 확인 유효기간 내에 중국증감회에 등록하고 발행을 재기할 수 있다.  **제34조** 상장회사가 증권 발행 시 이윤배분방안, 적립금의 출자액으로의 전환방안을 주주총회 의결에 회부하지 않았거나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었지만 실시하지 않은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방안을 실시한 후에 발행하여야 한다. 관련 방안 실시 전에 주간사는 상장회사의 발행증권 판매를 대행하지 못한다.  **제35조** 상장회사에서 초기 주주에게 주식을 배당 판매(이하 주식매당이라 함)하는 경우 주식 권리등록일 명부에 등록된 주주에게만 배당 판매해야 하며 배당 판매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36조** 상장회사가 비 특정대상으로부터 주식을 공개모집(이하 추가발행이라 함)하거나 전환가능 회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간사는 오프라인 배당판매에 참여하는 기구투자자를 분류하여 유형에 따라 상이한 배당판매 비율을 정하고 동일 유형의 기구투자자에 대해서는 동일 비율을 정하여 배당 판매하여야 한다. 주간사는 발행 공고에 기구투자자 분류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주간사가 기구투자자를 분류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배당판매와 온라인 발행 간에 상호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하며 상호조달 후 양자의 배당 취득비율은 일치하여야 한다.  **제37조** 상장회사가 주식을 추가발행하거나 전환가능 회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초기 주주에게 우선 배당할 수 있으며 우선 배당비율을 발행 공고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 상장회사가 증권을 비공개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대상과 발행수량의 선정은 상장회사 증권발행과 관련한 중국증감회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장 증권의 판매대행**  **제39조** 증권회사는 증권을 판매대행하기 전에 중국증감회에 발행 및 판매대행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증권을 판매대행하는 증권회사는《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일수판매 또는 대리판매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상장회사가 주식을 비공개 발행함에 있어서 자체판매방식이나 주식배당방식을 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판매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41조** 주식발행에 대리판매방식을 취한 경우 발행 공고에 발행실패 후의 처리조치를 게재하여야 한다. 주식발행 실패 후 주간사는 발행인을 협조하여 발행가격에 은행의 동기 저금이자를 추가하여 주식 구매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42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판매대행 팀이 증권발행을 대행하는 경우 판매대행 팀을 구성하는 판매대행업체는 판매대행 팀 합의를 체결하고 메인 판매대행업체에서 책임지고 대행활동을 주관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증권회사가 공동의 주간사로 되는 경우 모든 증권회사가 공동으로 주간사의 책임을 부담하고 관련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판매대행 팀이 3개 이상 판매대행업체로 구성된 경우 부 주간사를 두어 주간사의 판매 대행활동을 협조하게 하여야 한다.  **제43조** 판매대행 팀 구성원은 판매대행 팀 합의서 및 판매 대행합의서의 규정에 따라 대행활동을 진행하여야 하며 허위대행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44조** 판매대행 합의와 판매대행 팀 합의는 발행가격을 확정한 후 체결할 수 있다.  **제45조** 메인 판매대행업체는 전문부문이나 기구를 설치하여 회사의 투자은행, 연구부문, 판매부문 등을 협조하여 정보 공개, 추천, 기장, 가격 확정, 배당 판매, 자금 청산 등 업무를 공동으로 완성하여야 한다.  **제46조** 증권회사는 판매대행과정에 가불, 리베이트 또는 중국증감회가 확정한 기타 부당수단으로 다인의 주식구매를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 증권 발행기간에 상장회사의 증권 거래중지나 재개 관련일정은 증권거래소의 관련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메인 판매대행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구매신청 자금을 지체 없이 이체하고 이자를 동결하여야 한다.  **제48조** 투자자가 구매 대금지불을 완료한 후 주간사는 증권업무 관련 자격을 갖춘 회계사사무소(이하 회계사사무소라 함)에 의뢰하여 구매자금을 검정한 후 자금검정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초로 주식을 공개 발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전략투자, 가격조회대상의 가격조회와 배당 판매행위가 법률, 행정법규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지 등을 견증하고 전문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 최초 공개 발행하는 주식수량이 4억 주 이상인 경우 발행인 및 주간사는 발행방안에서 초과액 배당 판매 선택권을 채택할 수 있다. 초과액 배당 판매 선택권의 실시는 중국증감회와 증권거래소, 증권등록정산기구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0조** 증권을 공개 발행하는 경우 주간사는 증권 상장 후 10일내에 중국증감회에 판매대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발행기간의 기본상황 및 증권 상장 후의 상황을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하기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모집 설명서 단행본  (2) 판매대행 합의서와 판매대행 팀 합의서  (3) 변호사의 견증의견서  (4) 회계사사무소의 자금검정 보고서  (5) 중국증감회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51조** 상장회사가 주식을 비공개 발행하는 경우 발행인 및 주간사는 발행을 완료한 후 중국증감회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행 상황보고서  (2) 금번 발행과정 및 구매대상의 합법성에 대한 주간사의 보고서  (3) 금번 발행과정 및 구매대상의 합법성에 대한 발행인 변호사의 견증의견서  (4) 회계사사무소의 자금검정 보고서  (5) 중국증감회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5장 정보 공개**  **제52조** 발행인과 주간사는 발행과정에 중국증감회가 규정한 절차와 내용, 양식에 따라 정보공개서류를 작성하고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3조** 최초 공개발행 주식 신청서류를 접수해서부터 발행인의 신청이 중국증감회의 확인을 받고 법에 따라 주식모집 의향서를 등재하기 전까지 발행인 및 금번 발행과 관련한 당사자 그 어떤 공개방식이나 변형적 공개방식으로 주식발행과 관련한 추천활동을 전개하여서는 아니되며 기타 이익 관계자를 통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하는 등 방식으로 관련 활동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발행인과 판매대행업체가 발행과정에 공개한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벽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우세를 확대하고 위험을 무마하고 이미지를 미화하여 투자자를 오도해서는 아니되며 허위 기재, 오도성 진술,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54조** 발행인 및 주간사는 발행과정에서 공개할 정보를 적어도 일종의 중국증감회가 지정한 간행물에 등재하고 중국증감회가 지정한 인터넷 웹 사이트에 발표하고 중국증감회가 지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대중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 발행인이 공개하는 주식공모 의향서는 발행가격, 공모금액을 제외한 기타 내용과 양식이 주식공모 설명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주식공모 설명서와 동등한 법률효력을 가진다.  **제56조** 발행인 및 그 주간사는 주식공모 의향서 또는 주식공모 설명서의 요약을 등재하는 동시에 발행 공고를 발표하며 발행방안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발행인 및 그 주간사는 발행가격을 확정한 후 오프라인 구매상황과 오프라인 견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7조** 발행인 및 그 주간사는 발행가격, 발행주가 이익률 및 발행주가 이익률 계산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발행인은 발행주가의 순 이윤율 등 발행인 소재업계의 특성을 보여주는 발행가격지표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8조** 최초 공개발행 주식을 전략투자자에게 배당 판매하는 경우 발행인 및 그 주간사는 오프라인 배당 판매결과 공고에 전략투자자의 명칭, 구매수량 및 보유기간 약정 등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9조** 상장회사는 신주를 비공개 발행한 후 중국증감회의 요구에 따라 발행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0조** 금번 발행한 주식이 상장하기 전에 발행인과 그 주간사는 증권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정보 공개서류를 작성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감독관리 및 처벌**  **제61조** 발행인, 증권회사, 증권서비스기구, 가격조회대상 및 그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가 법률, 행정법규 또는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증감회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감독관리미팅, 중점 주목, 경고서 발송, 공개설명 명령, 부당 인선 인정, 시장진출 금지 등 감독관리조치를 취하고 이를 신용기록에 기재한다.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주어야 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한다. 중국 증권업협회는 자율규칙에 근거하여 관련 단체와 개인에 대해 자율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2조** 증권회사에 하기 행위 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중국증감회에서 확인일로부터 36개월간 증권 판매대행 업무를 잠시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인가받지 않은 증권을 판매대행하는 행위  (2) 판매대행과정에서 허위 또는 투자자를 오도하는 광고나 기타 추천활동을 하였고 부당 수단으로 타인을 유인하여 주식을 구매하게 하였거나 공개한 정보에 허위기재,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고 그 사안이 심각한 행위  (3) 자기자금으로 또는 변상적으로 자기자금을 통하여 오프라인 가격조회와 배당 판매에 참여하였거나 타인을 사촉하여 높은 견적을 제시하게 하고 낮은 견적을 제한하여 정상적인 견적질서를 심각히 교란한 행위.  **제63조** 증권회사에 하기 행위 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중국증감회는 구체적 사안정도에 비추어 확인일로부터 3개월 내지 12개원간 증권 판매대행 업무 잠시 중지를 명령한다.  (1) 증권 발행정보를 사전에 누설한 행위  (2) 부당경쟁 수단으로 판매대행 업무를 맡은 행위  (3) 가격조회대상에게 주식공모 설명서(주식공모 의향서) 등에서 공개한 정보이외에 발행인의 기타정보를 제공한 행위  (4) 판매대행과정에 실제 운영과 중국증감회에 제출한 발행방안과 불일치한 행위  (5)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투자가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거나 반포한 행위  (6) 규정을 위반하고 직접 또는 그 이익관계자를 통하여 구매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재무원조나 보상을 제공한 행위  (7) 추천된 가격조회대상에게 이익을 중 행위.  **제64조** 발행인 및 그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하기 행위 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중국증감회에서 그 정돈개선을 명령할 수 있으며 그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비추어 감독관리 미팅, 중점 주목, 경고서 발송, 공개 설명하도록 명령, 부당인선으로 인정, 시장 진출금지 등의 감독관리조치를 취하고 이를 신용기록에 기재한다.  (1) 가격조회대상에게 주식공모 설명서(주식공모 의향서) 등에서 공개한 정보 이외에 발행인의 기타정보를 제공한 경우  (2) 규정을 위반하고 직접 또는 그의 이익관계측을 통하여 구매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재무원조나 보상을 제공한 경우  (3) 발행인의 주식이 상장하기 전에 허위광고나 투자자를 오도하는 광고 또는 기타 홍보활동과 추천활동을 하거나, 부당수단으로 타인을 유도하여 견적 제시 또는 주식을 구매하게 하거나, 또는 공개한 정보에 허위 기재,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고 그 사안이 심각한 경우  (4) 타인을 사촉하여 높은 견적을 제시하게 하고 낮은 견적을 제한함으로써 정상적인 견적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한 경우.  **제65조** 가격조회대상에게 하기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중국 증권업협회에서 그를 가격조회대상 명부에서 제거한다.  (1) 이 방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을 경우  (2) 최근 12개월간에 감독관리 관련 요구 위반으로 감독관리 미팅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3) 연도 총결보고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7장 부 칙**  **제66조** 상장회사 기타증권의 발행과 판매대행은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67조** 이 방법은 2006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증권경영기구의 주식 판매대행 업무 관리방법》(證委發[1996]제18호),《주식발행 중 부당행위 금지에 관한 통지》(證監發字[1996]제21호), 《주식발행 중 가불 등 행위를 철저히 저지하는 것에 관한 통지》(證監發字[1996]제169호),《증권경영기구의 자체 판매대행 주식 구매금지에 관한 통지》(證監機字[1997]제4호),《증권경영기구 주식 판매대행 업무의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證監機構字[1999]제54호),《법인의 주식 배당판매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證監發行字[1999]제121호),《주식 상장일정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證監發行字[2000]제86호),《증권경영기구의 주식 판매대행 업무 감독관리활동에 관한 보충통지》(證監機構字[2000]제199호),《신주 발행업체의 인터넷 회사 로드쇼에 관한 통지》(證監發行字[2001]제12호) 및《최초 공개발행 주식의 가격조회제도 시범적 시행문제에 관한 통지》(證監發行字[2004]제162호)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  | **证券发行与承销管理办法**  （2006年9月11日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第189次主席办公会议审议通过，根据2012年5月18日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关于修改〈证券发行与承销管理办法〉的决定》修订）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证券发行与承销行为，保护投资者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制定本办法。  **第二条** 发行人在境内发行股票或者可转换公司债券（以下统称证券）、证券公司在境内承销证券，以及投资者认购境内发行的证券，适用本办法。  发行人、证券公司和投资者参与证券发行，还应当遵守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以下简称中国证监会）有关证券发行的其他规定，以及证券交易所、证券登记结算机构的业务规则和中国证券业协会的自律规则。证券公司承销证券，还应当遵守中国证监会有关保荐制度、风险控制制度和内部控制制度的相关规定。  **第三条** 为证券发行出具相关文件的证券服务机构和人员，应当按照本行业公认的业务标准和道德规范，严格履行法定职责，对其所出具文件的真实性、准确性和完整性承担责任。  **第四条** 中国证监会依法对证券发行和承销行为进行监督管理。  **第二章 询价与定价**  **第五条** 首次公开发行股票，可以通过向询价对象询价的方式确定股票发行价格，也可以通过发行人与主承销商自主协商直接定价等其他合法可行的方式确定发行价格，发行人应在发行公告中说明本次发行股票的定价方式。上市公司发行证券的定价，应当符合中国证监会关于上市公司证券发行的有关规定。  询价对象是指符合本办法规定条件的证券投资基金管理公司、证券公司、信托投资公司、财务公司、保险机构投资者、合格境外机构投资者、主承销商自主推荐的机构和个人投资者，以及经中国证监会认可的其他投资者。  主承销商自主推荐询价对象，应当按照本办法和中国证券业协会自律规则的规定，制定明确的推荐原则和标准，建立透明的推荐决策机制，并报中国证券业协会登记备案。自主推荐的询价对象包括具有较高定价能力和长期投资取向的机构投资者和投资经验比较丰富的个人投资者。  **第六条** 询价对象及其管理的证券投资产品（以下称股票配售对象）应当在中国证券业协会登记备案，接受中国证券业协会的自律管理。  **第七条** 机构投资者作为询价对象应当符合下列条件：  （一）依法设立，最近12个月未因重大违法违规行为被相关监管部门给予行政处罚、采取监管措施或者受到刑事处罚；  （二）依法可以进行股票投资；  （三）信用记录良好，具有独立从事证券投资所必需的机构和人员；  （四）具有健全的内部风险评估和控制系统并能够有效执行，风险控制指标符合有关规定；  （五）按照本办法的规定被中国证券业协会从询价对象名单中去除的，自去除之日起已满12个月。  个人投资者作为询价对象应当具备5年以上投资经验、较强的研究能力和风险承受能力。主承销商应当严格按照既定的推荐原则、标准和程序进行推荐。  **第八条** 下列机构投资者作为询价对象除应当符合第七条规定的条件外，还应当符合下列条件：  （一）证券公司经批准可以经营证券自营或者证券资产管理业务；  （二）信托投资公司经相关监管部门重新登记已满两年，注册资本不低于4亿元，最近12个月有活跃的证券市场投资记录；  （三）财务公司成立两年以上，注册资本不低于3亿元，最近12个月有活跃的证券市场投资记录。  **第九条** 主承销商可以在刊登招股意向书后向询价对象提供投资价值研究报告。发行人、主承销商和询价对象不得以任何形式公开披露投资价值研究报告的内容，但中国证监会另有规定的除外。  **第十条** 投资价值研究报告应当由承销商的研究人员独立撰写并署名，承销商不得提供承销团以外的机构撰写的投资价值研究报告。出具投资价值研究报告的承销商应当建立完善的投资价值研究报告质量控制制度，撰写投资价值研究报告的人员应当遵守证券公司内部控制制度。  **第十一条** 撰写投资价值研究报告应当遵守下列要求：  （一）独立、审慎、客观；  （二）引用的资料真实、准确、完整、权威并须注明来源；  （三）对发行人所在行业的评估具有一致性和连贯性；  （四）无虚假记载、误导性陈述或者重大遗漏。  **第十二条** 投资价值研究报告应当对影响发行人投资价值的因素进行全面分析，至少包括下列内容：  （一）发行人的行业分类、行业政策，发行人与主要竞争者的比较及其在行业中的地位；  （二）发行人经营状况和发展前景分析；  （三）发行人盈利能力和财务状况分析；  （四）发行人募集资金投资项目分析；  （五）发行人与同行业可比上市公司的投资价值比较；  （六）宏观经济走势、股票市场走势以及其他对发行人投资价值有重要影响的因素。  投资价值研究报告应当在上述分析的基础上，运用行业公认的估值方法对发行人股票的合理投资价值进行预测。  **第十三条** 招股说明书（申报稿）预先披露后，发行人和主承销商可向特定询价对象以非公开方式进行初步沟通，征询价格意向，预估发行价格区间，也可通过其他合理方式预估发行价格区间。  初步沟通不得采用公开或变相公开方式进行，不得向询价对象提供除预先披露的招股说明书（申报稿）等公开信息以外的发行人其他信息。  **第十四条** 采用询价方式定价的，发行人和主承销商可以根据初步询价结果直接确定发行价格，也可以通过初步询价确定发行价格区间，在发行价格区间内通过累计投标询价确定发行价格。  **第十五条** 首次公开发行股票招股意向书刊登后，发行人及其主承销商可以向询价对象进行推介和询价，并通过互联网等方式向公众投资者进行推介。  发行人及其主承销商向公众投资者进行推介时，向公众投资者提供的发行人信息的内容及完整性应当与向询价对象提供的信息保持一致。  **第十六条** 发行人及其主承销商在推介过程中不得夸大宣传，或以虚假广告等不正当手段诱导、误导投资者，不得干扰询价对象正常报价和申购，不得披露除招股意向书等公开信息以外的发行人其他信息；推介资料不得存在虚假记载、误导性陈述或者重大遗漏。  承销商应当保留推介、询价、定价过程中的相关资料并存档备查，包括推介宣传材料、路演现场录音等，如实、全面反映询价、定价过程。  **第十七条** 采用询价方式确定发行价格的，询价对象可以自主决定是否参与初步询价，询价对象申请参与初步询价的，主承销商无正当理由不得拒绝。未参与初步询价或者参与初步询价但未有效报价的询价对象，不得参与累计投标询价和网下配售。  **第十八条**  询价对象应当遵循独立、客观、诚信的原则合理报价，不得协商报价或者故意压低或抬高价格。  **第十九条** 主承销商的证券自营账户不得参与本次发行股票的询价、网下配售和网上发行。  与发行人或其主承销商具有实际控制关系的询价对象的自营账户，不得参与本次发行股票的询价、网下配售，可以参与网上发行。  **第二十条** 发行人及其主承销商在发行价格区间和发行价格确定后，应当分别报中国证监会备案，并予以公告。  **第二十一条** 询价对象应当在年度结束后一个月内对上年度参与询价的情况进行总结，并就其是否持续符合本办法规定的条件以及是否遵守本办法对询价对象的监管要求进行说明。总结报告应当报中国证券业协会备案。  **第二十二条** 发行人与主承销商自主协商确定发行价格，或采用询价以外其他合法可行方式确定发行价格的，应当在发行方案中详细说明定价方式，并在发行方案报送中国证监会备案后刊登招股意向书。  **第三章 证券发售**  **第二十三条** 首次公开发行股票数量在4亿股以上的，可以向战略投资者配售股票。发行人应当与战略投资者事先签署配售协议，并报中国证监会备案。  发行人及其主承销商应当在发行公告中披露战略投资者的选择标准、向战略投资者配售的股票总量、占本次发行股票的比例，以及持有期限制等。  **第二十四条** 战略投资者不得参与首次公开发行股票的初步询价和累计投标询价，并应当承诺获得本次配售的股票持有期限不少于12个月，持有期自本次公开发行的股票上市之日起计算。  **第二十五条** 发行人及其主承销商应当向参与网下配售的询价对象配售股票。发行人及其主承销商向询价对象配售股票的数量原则上不低于本次公开发行新股及转让老股（简称为本次发行）总量的50%。  询价对象与发行人、承销商可自主约定网下配售股票的持有期限。  **第二十六条** 股票配售对象限于下列类别：  （一）经批准募集的证券投资基金；  （二）全国社会保障基金；  （三）证券公司证券自营账户；  （四）经批准设立的证券公司集合资产管理计划；  （五）信托投资公司证券自营账户；  （六）信托投资公司设立并已向相关监管部门履行报告程序的集合信托计划；  （七）财务公司证券自营账户；  （八）经批准的保险公司或者保险资产管理公司证券投资账户；  （九）合格境外机构投资者管理的证券投资账户；  （十）在相关监管部门备案的企业年金基金；  （十一）主承销商自主推荐机构投资者管理的证券投资账户和自主推荐个人投资者的证券投资账户；  （十二）经中国证监会认可的其他证券投资产品。  机构投资者管理的证券投资产品在招募说明书、投资协议等文件中以直接或间接方式载明以博取一、二级市场价差为目的申购新股的，相关证券投资账户不得作为股票配售对象。  **第二十七条** 询价对象应当为其管理的股票配售对象分别指定资金账户和证券账户，专门用于累计投标询价和网下配售。指定账户应当在中国证监会、中国证券业协会和证券登记结算机构登记备案。  **第二十八条** 股票配售对象参与累计投标询价和网下配售应当全额缴付申购资金，单一指定证券账户的累计申购数量不得超过本次向询价对象配售的股票总量。  **第二十九条** 发行人及其主承销商通过累计投标询价确定发行价格的，当发行价格以上的有效申购总量大于网下配售数量时，应当对发行价格以上的全部有效申购进行同比例配售。  **第三十条** 主承销商应当对询价对象和股票配售对象的登记备案情况进行核查，对有下列情形之一的询价对象不得配售股票：  （一）采用询价方式定价但未参与初步询价；  （二）询价对象或者股票配售对象的名称、账户资料与中国证券业协会登记的不一致；  （三）未在规定时间内报价或者足额划拨申购资金；  （四）有证据表明在询价过程中有违法违规或者违反诚信原则的情形。  **第三十一条** 发行人及其主承销商网下配售股票，应当与网上发行同时进行。  网上发行时发行价格尚未确定的，参与网上发行的投资者应当按价格区间上限申购，如最终确定的发行价格低于价格区间上限，差价部分应当退还给投资者。  投资者参与网上发行应当遵守证券交易所和证券登记结算机构的相关规定。  **第三十二条** 首次公开发行股票的发行人及其主承销商应当在网下配售和网上发行之间建立双向回拨机制，根据申购情况调整网下配售和网上发行的比例。  网上申购不足时，可以向网下回拨由网下投资者申购，仍然申购不足的，可以由承销团推荐其他投资者参与网下申购。  网下中签率为网上中签率的2至4倍时，发行人和承销商应将本次发售股份中的10%从网下向网上回拨；4倍以上的应将本次发售股份中的20%从网下向网上回拨。  **第三十三条** 初步询价结束后，公开发行股票数量在4亿股以下，提供有效报价的询价对象不足20家的，或者公开发行股票数量在4亿股以上，提供有效报价的询价对象不足50家的，发行人及其主承销商不得确定发行价格，并应当中止发行。  网下投资者在既定的网下发售比例内有效申购不足，不得向网上回拨，可以中止发行。网下报价情况未及发行人和主承销商预期、网上申购不足、网上申购不足向网下回拨后仍然申购不足的，可以中止发行。中止发行的具体情形可以由发行人和承销商约定，并予以披露。  中止发行后，在核准文件有效期内，经向中国证监会备案，可重新启动发行。  **第三十四条** 上市公司发行证券，存在利润分配方案、公积金转增股本方案尚未提交股东大会表决或者虽经股东大会表决通过但未实施的，应当在方案实施后发行。相关方案实施前，主承销商不得承销上市公司发行的证券。  **第三十五条** 上市公司向原股东配售股票（以下简称配股），应当向股权登记日登记在册的股东配售，且配售比例应当相同。  **第三十六条** 上市公司向不特定对象公开募集股份（以下简称增发）或者发行可转换公司债券，主承销商可以对参与网下配售的机构投资者进行分类，对不同类别的机构投资者设定不同的配售比例，对同一类别的机构投资者应当按相同的比例进行配售。主承销商应当在发行公告中明确机构投资者的分类标准。  主承销商未对机构投资者进行分类的，应当在网下配售和网上发行之间建立回拨机制，回拨后两者的获配比例应当一致。  **第三十七条** 上市公司增发股票或者发行可转换公司债券，可以全部或者部分向原股东优先配售，优先配售比例应当在发行公告中披露。  **第三十八条** 上市公司非公开发行证券的，发行对象及其数量的选择应当符合中国证监会关于上市公司证券发行的相关规定。  **第四章 证券承销**  **第三十九条** 证券公司实施证券承销前，应当向中国证监会报送发行与承销方案。  **第四十条** 证券公司承销证券，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第二十八条的规定采用包销或者代销方式。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未采用自行销售方式或者上市公司配股的，应当采用代销方式。  **第四十一条** 股票发行采用代销方式的，应当在发行公告中披露发行失败后的处理措施。股票发行失败后，主承销商应当协助发行人按照发行价并加算银行同期存款利息返还股票认购人。  **第四十二条**  证券发行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应当由承销团承销的，组成承销团的承销商应当签订承销团协议，由主承销商负责组织承销工作。  证券发行由两家以上证券公司联合主承销的，所有担任主承销商的证券公司应当共同承担主承销责任，履行相关义务。承销团由3家以上承销商组成的，可以设副主承销商，协助主承销商组织承销活动。  **第四十三条** 承销团成员应当按照承销团协议及承销协议的规定进行承销活动，不得进行虚假承销。  **第四十四条** 承销协议和承销团协议可以在发行价格确定后签订。  **第四十五条** 主承销商应当设立专门的部门或者机构，协调公司投资银行、研究、销售等部门共同完成信息披露、推介、簿记、定价、配售和资金清算等工作。  **第四十六条** 证券公司在承销过程中，不得以提供透支、回扣或者中国证监会认定的其他不正当手段诱使他人申购股票。  **第四十七条** 上市公司发行证券期间相关证券的停复牌安排，应当遵守证券交易所的相关规则。  主承销商应当按有关规定及时划付申购资金冻结利息。  **第四十八条** 投资者申购缴款结束后，主承销商应当聘请具有证券相关业务资格的会计师事务所（以下简称会计师事务所）对申购资金进行验证，并出具验资报告；首次公开发行股票的，还应当聘请律师事务所对向战略投资者、询价对象的询价和配售行为是否符合法律、行政法规及本办法的规定等进行见证，并出具专项法律意见书。  **第四十九条** 首次公开发行股票数量在4亿股以上的，发行人及其主承销商可以在发行方案中采用超额配售选择权。超额配售选择权的实施应当遵守中国证监会、证券交易所和证券登记结算机构的规定。  **第五十条** 公开发行证券的，主承销商应当在证券上市后10日内向中国证监会报备承销总结报告，总结说明发行期间的基本情况及证券上市后的表现，并提供下列文件：  （一）募集说明书单行本；  （二）承销协议及承销团协议；  （三）律师见证意见；  （四）会计师事务所验资报告；  （五）中国证监会要求的其他文件。  **第五十一条** 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的，发行人及其主承销商应当在发行完成后向中国证监会报送下列文件：  （一）发行情况报告书；  （二）主承销商关于本次发行过程和认购对象合规性的报告；  （三）发行人律师关于本次发行过程和认购对象合规性的见证意见；  （四）会计师事务所验资报告；  （五）中国证监会要求的其他文件。  **第五章 信息披露**  **第五十二条** 发行人和主承销商在发行过程中，应当按照中国证监会规定的程序、内容和格式，编制信息披露文件，履行信息披露义务。  **第五十三条** 首次公开发行股票申请文件受理后至发行人发行申请经中国证监会核准、依法刊登招股意向书前，发行人及与本次发行有关的当事人不得采取任何公开方式或变相公开方式进行与股票发行相关的推介活动，也不得通过其他利益关联方或委托他人等方式进行相关活动。  发行人和承销商在发行过程中披露的信息，应当真实、准确、完整，不得片面夸大优势，淡化风险，美化形象，误导投资者，不得有虚假记载、误导性陈述或者重大遗漏。  **第五十四条** 发行人及其主承销商应当将发行过程中披露的信息刊登在至少一种中国证监会指定的报刊，同时将其刊登在中国证监会指定的互联网网站，并置备于中国证监会指定的场所，供公众查阅。  **第五十五条** 发行人披露的招股意向书除不含发行价格、筹资金额以外，其内容与格式应当与招股说明书一致，并与招股说明书具有同等法律效力。  **第五十六条** 发行人及其主承销商应当在刊登招股意向书或者招股说明书摘要的同时刊登发行公告，对发行方案进行详细说明。  发行人及其主承销商应当在发行价格确定后，披露网下申购情况、网下具体报价情况。  **第五十七条** 发行人及其主承销商应公告发行价格、发行市盈率及发行市盈率的计算方法。发行人还可以同时披露市净率等反映发行人所在行业特点的发行价格指标。  **第五十八条** 首次公开发行股票向战略投资者配售股票的，发行人及其主承销商应当在网下配售结果公告中披露战略投资者的名称、认购数量及承诺持有期等情况。  **第五十九条** 上市公司非公开发行新股后，应当按中国证监会的要求编制并披露发行情况报告书。  **第六十条** 本次发行的证券上市前，发行人及其主承销商应当按证券交易所的要求编制信息披露文件并公告。  **第六章 监管和处罚**  **第六十一条** 发行人、证券公司、证券服务机构、询价对象及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违反法律、行政法规或者本办法规定，中国证监会可以责令其整改，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可以采取监管谈话、重点关注、出示警示函、责令公开说明、认定为不适当人选、市场禁入等监管措施，并记入诚信档案；依法应予行政处罚的，依照有关规定进行处罚；涉嫌犯罪的，依法移送司法机关，追究其刑事责任。中国证券业协会应当根据自律规则对有关单位和个人采取自律惩戒措施。  **第六十二条** 证券公司有下列行为之一的，除依法承担法律责任外，中国证监会可以自确认之日起责令其暂停36个月证券承销业务：  （一）承销未经核准的证券的；  （二）在承销过程中，进行虚假或误导投资者的广告或者其他宣传推介活动，以不正当手段诱使他人报价或申购股票，或者披露的信息有虚假记载、误导性陈述或者重大遗漏，情节严重的；  （三）以自有资金或者变相通过自有资金参与网下询价和配售，或者唆使他人报高价，限制报低价，严重干扰正常报价秩序的。  **第六十三条** 证券公司有下列行为之一的，除依法承担法律责任外，中国证监会将视情节轻重自确认之日起责令其暂停3至12个月证券承销业务：  （一）提前泄露证券发行信息；  （二）以不正当竞争手段招揽承销业务；  （三）向询价对象提供除招股说明书（招股意向书）等公开信息以外的发行人其他信息；  （四）在承销过程中的实际操作与报送中国证监会的发行方案不一致；  （五）违反相关规定撰写或者发布投资价值研究报告；  （六）违反规定直接或通过其利益相关方向参与认购的投资者提供财务资助或者补偿；  （七）向推荐的询价对象输送利益。  **第六十四条** 发行人及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除依法承担法律责任外，中国证监会可以责令其整改，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视情节轻重采取监管谈话、重点关注、出示警示函、责令公开说明、认定为不适当人选、市场禁入等监管措施，并记入诚信档案：  （一）向询价对象提供除招股说明书（招股意向书）等公开信息以外的发行人其他信息；  （二）违反规定直接或通过其利益相关方向参与认购的投资者提供财务资助或者补偿；  （三）在发行人股票上市前，进行虚假或误导投资者的广告或者其他宣传推介活动，以不正当手段诱使他人报价或申购股票，或者披露的信息有虚假记载、误导性陈述或者重大遗漏，情节严重的；  （四）唆使他人报高价，限制报低价，严重干扰正常报价秩序。  **第六十五条** 询价对象有下列情形之一的，中国证券业协会应当将其从询价对象名单中去除：  （一）不再符合本办法规定的条件；  （二）最近12个月内因违反相关监管要求被监管谈话3次以上；  （三）未按时提交年度总结报告。  **第七章 附 则**  **第六十六条** 上市公司其他证券的发行和承销比照本办法执行。  **第六十七条** 本办法自2006年9月19日起施行。《证券经营机构股票承销业务管理办法》（证委发〔1996〕18号）、《关于禁止股票发行中不当行为的通知》（证监发字〔1996〕21号）、《关于坚决制止股票发行中透支等行为的通知》（证监发字〔1996〕169号）、《关于禁止证券经营机构申购自己承销股票的通知》（证监机字〔1997〕4号）、《关于加强证券经营机构股票承销业务监管工作的通知》（证监机构字〔1999〕54号）、《关于法人配售股票有关问题的通知》（证监发行字〔1999〕121号）、《关于股票上市安排有关问题的通知》（证监发行字〔2000〕86号）、《关于证券经营机构股票承销业务监管工作的补充通知》（证监机构字〔2000〕199号）、《关于新股发行公司通过互联网进行公司推介的通知》（证监发行字〔2001〕12号）及《关于首次公开发行股票试行询价制度若干问题的通知》（证监发行字〔2004〕162号）同时废止。 |